

광명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11. 10 조례 제30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제167연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광명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광명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